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7.27.)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5
3. 거창시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9
4.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13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7. 11.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 7.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의 이용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요건 완화 기준 신설(안 제10조)
 - 1) 요건 : 가공하려는 주산물이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 2) 절차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3) 완화 사유 :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6. 15. ~ 7. 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장봉기]

-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를 “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u>산물</u>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u>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u>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7. 11.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7.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사업명 :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자 :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지영
 - 사업기간 : 2022년 6월 ~ 12월(6개월간)
 - 발전용량 : 20kw
 - 사업비 : 44,000천원(군 39,600, 자부담 4,400)
 - 연간수익 : 4,200 ~ 4,600천원 정도

※ 수익금 사용

웅양면 곰내미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사용

나. 추진사항

○ 2022. 6. :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추진 중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웅양면 노현리 314 (주차장)	4,956	250	20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 지 영	

라. 향후 추진 계획

○ 2022. 7.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행복농촌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원상복구) 비용 예치

○ 2022. 7. ~ 8. : 전기발전사업 허가(경제교통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제4항

나. 위치도 및 현장 사진 : 붙임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장봉기]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웅양면 곰

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부지는 거창군 소유의 부지이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 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 거창군 용양면 노현리 314 (지목:대지)



현장사진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7. 11.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7.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석 행복농촌과장)

- 가.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안정성 유지, 예산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현황
 - 시설명 : 거창사과 푸드코트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 3372(푸드종합센터 옆)
 - 규 모 : 998.27㎡ (1층 535.13㎡, 2층 463.14㎡)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998.27	-	철골구조
1층	535.13	제품전시판매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463.14	휴식, 체험, 교육 공간 및 옥외휴식공간 등	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나. 위탁사무
 - 시설 : 푸드코트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 운영 :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음료 및 베이커리류 등 판매, 체험·교육 등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20. 8. ~ 11. : 푸드코트 디자인 컨설팅 용역 시행
- 2020. 11. ~ 2021. 4. : 푸드코트 실시설계 시행
- 2021. 11. : 입찰 및 낙찰자 선정·계약
- 2021. 12. : 거창사과 푸드코트 착공
- 2022. 4. :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례 제정
- 2022. 5. ~ 8.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비용 산정 용역 추진 중

라. 운영계획

- 위탁자 공모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간)
 - 수탁대상 : 푸드코트 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등
- 위탁범위
 - 푸드코트 토지·건물·기계 및 집기류 유지 및 관리
 - 가공제품 홍보 및 판매, 음료 및 베이커리류 등 판매, 체험·교육 등

마. 소요예산

- 금103,826천원 정도(3년간)
 - ※ 초기 운영(2년간) 적자운영 후 3년차부터 흑자운영이 예상되며,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22. 8. 완료)에 따른 위탁운영비 변동가능성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

나. 위탁운영계획 : 회의록 참조

다. 향후계획

- 2022. 7.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2. 8. : 위탁비용 최종 산정
- 2022. 10. ~ 11. :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022. 12. : 협상 및 협약 체결
- 2023. 1. : 위탁운영 실시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장봉기]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 푸드코트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유지, 예산절감을 위해 2023. 1.부터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탁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거창사과 푸드코트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7. 8.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2. 7. 11.
- 다. 상정일자 : 제26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7.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재훈 수도사업소장]

가.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 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287개소의 관리
- 나. 소규모수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복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계	287	6	20	24	31	27	8	33	23	14	39	25	37
마을상수도	112	4	10	5	5	13	3	17	12	7	19	10	7
소규모급수시설	175	2	10	19	26	14	5	16	11	7	20	15	30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7. 12. 31.(5년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마. 수탁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저수조청소업 소지 업체

바. 주요 위탁내용

- 배수지 청소, 소독약품 공급 및 염소투입기 등 기기점검
- 취수원, 배수지, 급수설비 점검 및 긴급보수
- 누수 동결 등 수시정비 및 긴급 보수
- 각종 민원처리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수도법」 제47조 1항, 제55조 1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나.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7월
-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 2022년 8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22년 9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10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12월
- 위탁계약 운영 : 2023년 1월

다. 소요예산 : 연간 350,000천원 정도

라. 위탁운영 계획 : 회의록 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장봉기)

- 본 동의안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